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가. 의안번호 : 제3462호
- 나. 제 안 자 : 김길영 의원(찬성자 19명)
- 다. 제 안 일 : 2026년 2월 9일
- 라. 회 부 일 : 2026년 2월 12일

2. 제안이유

- 조례상 “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자”와 “공공디자인 사업자”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어 조례 용어를 “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자”로 통일하고자 함
- 또한 현행 조례의 회의록 작성·비치 방식에 대한 해석상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회의록 작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제24조제6항의 “공공디자인 사업자”를 “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자”로 개정하여 용어를 통일함
- 나. 제14조제3항의 “회의록을 요약하여”를 “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로 개정하여 회의록 작성 기준을 명확히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 의견

가.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회의록 작성·비치 방식과 관련하여 “회의록을 요약하여”를 “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로 수정(안 제14조제3항)하여 회의록 작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현행 조례에 “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자”와 “공공디자인 사업자”라는 용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어 해석상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자”로 통일(안 제24조제6항)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② (생략)</p> <p>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디자인정책과장을 간사로 둔다. 간사는 회의록을 요약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p>④ (생략)</p>	<p>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24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사업) ① ~ ⑤ (생략)</p> <p>⑥ 공공디자인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공공디자인 사업자는 완료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⑦·⑧ (생략)</p>	<p>제24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사업) ①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 사업의 시행자----- -----.</p> <p>⑦·⑧ (현행과 같음)</p>

나. 검토 내용

“개정안 검토”

1) 회의록 작성기준 명확화 (안 제14조제3항)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4조제3항은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비치 방식과 관련하여 “회의록을 요약하여”를 “회의록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로 변경하여 회의록 작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② (생략)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디자인정책과장을 간사로 둔다. 간사는 회의록을 요약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회의 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 - ④ (현행과 같음)

- 위원회는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¹⁾ 및 현행 조례 제8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며, 현행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요약하여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 제16조는 위원회가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²⁾

1)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지역위원회)

- ①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및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항 생략)
 -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④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6조(회의록 등의 비치)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디자인정책담당관)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회의록 및 심의의결조서를 첨부하여 작성·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자료는 인터넷 홈페이지(서울특별시 정보소통광장)를 통해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행 조례 제14조제3항은 위원회 간사가 “회의록을 요약하여” 작성·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요약의 범위와 수준이 명확하지 않아 회의록 작성 방식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회의록은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논의 내용과 결정사항을 공식적으로 기록·보존하는 자료로서,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되는바, “요약”이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간략한 기록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회의록 작성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4조제3항은 “회의록을 요약하여”를 “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로 개정하여 회의록 작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회의록이 단순한 축약에 그치지 않고 회의 진행 과정에서 논의된 핵심 사항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도록 하려는 취지라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하겠음

2) 조례 용어 정비 (안 제24조제6항)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24조제6항은 현행 조례에서 “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자”와 “공공디자인 사업자”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어 디자인을 통해 공공성을 구현하는 사업의 기획 및 설치·관리 등을 하는 서울시 및 공공기관 등³⁾을 의미하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자”로 용어를 통일하여 조문 해석 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3)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이 공공공간 및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 사업"이란 시 및 공공기관 등이 디자인을 통해 공공성을 구현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생략)

현행	개정안
제24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사업) ① ~ ⑤ (생략) ⑥ 공공디자인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 공공디자인 <u>사업자</u> 는 완료사항을 시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⑧ (생략)	제24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사업)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u>사업의 시행자</u> ----- -----. ⑦·⑧ (현행과 같음)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일 개념에 대한 용어를 다르게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조례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 집행 과정에서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여 사업 수행 및 관리 책임주체를 보다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임

다. 종합 의견

- 이번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회의록 작성 기준의 불명확성과 조례 용어의 혼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4조제3항은 현행 규정 중 “회의록을 요약하여”라는 표현이 회의록 작성 범위와 수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여 조례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로 정비하여 회의록 작성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24조제6항은 현행 조례상 “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자”와 “공공디자인 사업자”라는 용어가 함께 사용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용어 해석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디자인 사업의 시행

자”로 용어를 통일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 및 공공기관 등이 디자인을 통해 공공성을 구현하는 사업의 주체임을 명확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임